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증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) 및 기재 명확화	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	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<u>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(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)</u> 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
기재 명확화	2. ~ 4. (생략) 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	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<u>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</u>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

환매조건부 매수 삭제	6. 환매조건부 <u>매수 또는</u> 매도 7. ~ 9.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) 2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) <신설> ③ (생략)	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 6. 환매조건부 매도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) 2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) <u>3. 환매조건부 매수</u> ③ (현행과 같음)
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	
기재 정정	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 가. <u>제17조 제2항 제1호</u>에 따른 단기대출 나.(생략) 2. ~ 9. (생략)	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 가. <u>법 제83조제4항</u>에 따른 단기대출 나.(현행과 같음) 2. ~ 9. (현행과 같음)

오타자 정정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(생 략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생 략) ③ ~ ④ (생 략)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(현행과 같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기재 정정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 (생 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전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전전전영업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전전영업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
	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</u> <u>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